

1. 개정이유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2조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 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u></p>